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 월 09 일

회 사 명 :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우종인, 조원래
본 점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165-2
(전 화) 055 - 585 - 3800
(홈페이지)<http://www.bh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류흥문
(전 화)055 - 585 - 38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3월 24일(토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165-2 본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4기(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70원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에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2년 3 월 9일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종인, 조원래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재환 (출석률: 10.34%)
			찬 반 여부
11-1	2011.01.03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자금 차입의 건	미참석
11-2	2011.01.27	비엠씨(주) 대표이사 우종인 경남은행 함안지점 차입에 따른 법인연대보증입보	미참석
11-3	2011.02.01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BHI INDONESIA 설립에 대한 출자	미참석
11-4	2011.02.14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결의	미참석
11-5	2011.02.16	정기주주총회 소집	미참석
11-6	2011.02.16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체결의 건	미참석
11-7	2011.02.17	통화선도한도 및 개별 지급보증 약정의 건	미참석
11-8	2011.03.05	대표이사 선임	미참석
11-9	2011.03.16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	미참석
11-10	2011.03.17	외환은행 포괄여신한도 약정의 건	미참석
11-11	2011.04.19	산업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미참석
11-12	2011.04.29	한국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차입의 건	미참석
11-13	2011.05.13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 결정	찬성
11-14	2011.05.27	장기 운전자금 차입의 건	미참석
11-15	2011.06.09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미참석
11-16	2011.06.09	장기 운전자금 차입의 건	미참석
11-17	2011.06.15	비씨씨(주) 이행성 보증발급건에 관한 법인연대보증 입보의 건	미참석
11-18	2011.06.27	기한부 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미참석
11-19	2011.08.0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기채에 관한 건	미참석
11-20	2011.08.12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결정	찬성
11-21	2011.08.24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의 건	찬성
11-22	2011.08.31	기한부 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미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재환 (출석률: 10.34%)
			찬 반 여 부
11-23	2011.10.25	포괄수출금융 차입의 건	미참석
11-24	2011.10.28	지급보증한도 약정의 건	미참석
11-25	2011.11.04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미참석
11-26	2011.11.15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 결정	미참석
11-27	2011.11.16	비씨씨(주) 이행성 보증발급건에 관한 법인연대보증입보의 건	미참석
11-28	2011.12.07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미참석
11-29	2012.12.23	비엠씨(주)와 부동산매매의 건	미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명	4,000,000	45,000	45,000	급여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전원에 대한 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은 본 공고사항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지급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 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발전설비 및 열교환기 전문업체로서 주시장은 발전부문과 제철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 발전부문

① 산업의 특성

발전산업은 국가 기반시설로서 대규모의 투자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현재 생산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사업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며, 장기적 계획에 따라 꾸준히 발전용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발전설비의 구성은 주기와 보조기기류로 나뉘어 지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에 따라 발전형태와 주기가 정해지며, 보조기기류는 주기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는 원자로(원자력), 보일러(화력), 가스터빈·HRSG(복합화력)등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보조기기류는 크게 복수기, 급수가열기, CCW 쿨러, 탈기기 등이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발전설비의 특성상 산업이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계속적인 설비신설 투자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연간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859kw에서 2009년 8,092kw로 29년 사이 9.4배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전기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들의 사용이 장려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로 인해 원전의 발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전사태로 인한 일본의 전력수급의 공백을 공사기간이 짧은 복합화력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합화력설비의 발주증가가 예상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장기간의 계획하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국가적인 금융위기 상황이나 원재료인 철강재의 가격의 급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유가 급등시엔 상대적으로 복합발전설비의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④ 시장의 경쟁상황

1. 국내 발전설비 시장의 경우

1) PC Boiler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전력에 독점적 공급을 하였으나, 당사가 FW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시장진입을 한 후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국내업체 및 주로 일본계인 외국사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복합화력의 HRSG의 경우 최근 다수의 기업이 기술제휴를 통한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가고 있으며,

3) 보조기기(BOP)의 경우 당사와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3사가 경쟁해왔으나, 원자력발전의 시장확대 등에 따라 최근 몇 개 기업이 신규진입하고 있습니다.

2. 해외시장의 경우

보조기기(BOP)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전문업체가 공급하며, 일본의 경우 중공업에서 직접생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시장을 비롯한 세계적 시장확대에 따라 경쟁력있는 신규소싱그룹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실적과 실력을 갖춘 기업은 해외시장진출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PC Boiler, HRSG는 건설EPC사가 주로 발주하며,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건설사와의 동반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철설비부문

① 산업의 특성

제철설비의 영업대상은 POSCO를 비롯한 제철소와 종합건설사가 주가되며, 해당 설비는 소결공장 배열보일러, CDQ 배열보일러, 고로공장 배열회수설비, 열연.후판공장 배열회수설비, 제강공장 배열보일러, 기타 각 공장에서 가동 중인 각종 열교환기로 구성됩니다. 제철소 자체 소요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갖추고 있어 신설 및 증설 수요가 있으며, 운영 중인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 가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을 하는 기타 발전으로 HRSG, CDQ보일러 등이 있으며, 이는 고유가에 따라 신규투자시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의 합리화 차원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제철부문은 국내조강 생산통계를 보면 1991년 2,600만t에서 2010년 5,836만t으로 연평균 161.8만t 생산능력 증대를 보이며 이에 따른 Utility(발전공장, 산소공장) 등이 꾸준히 건설 및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의 기초소재인 상용Slab 수급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제철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설비의 기본적 보수부문은 공장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제철설비 수요는 철강 수요산업의 경기와 연관이 있는데, 08년 하반기 까지 하락세였던 철강가격이 2009년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철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중국의 파잉생산등이 철강가격의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므로 이에 대비해 제철설비에 대한 선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④ 시장의 경쟁요소

제철설비 시장은 국내의 경우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한국철강 등의 발주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로 POSCO를 중심으로 공급하였으며, 2011년을 포함 7년 연속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등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일본제철그룹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증대시켜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참여시장과,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구분 하면,

- ◆ 시장을 기준으로 발전부문, 제철부문 및 수출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 ◆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 순수발전 및 직.간접 발전을 포함한 발전설비,
 - 공기에열기(Recuperator)를 비롯한 제철설비,
 - 화공 등 기타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당사의 중심사업인 발전설비는

- 주기의 하나인 각종 보일러(Boiler)류(PC보일러, HRSG 등)
- 보일러(Boiler)와 터빈(Turbine)/발전기(Generator)를 연결하여주는 보조기기인 복수기(Condens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탈기기(Deaerator)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전소용 보조기기 즉 복수기(Steam Surface Condens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Feed Water Heater (L.P, H.P)), 탈기기(Deaerator)에 대한 Basic Thermal Engineering 및 제작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용 보일러(Boiler)에 있어 화력발전소와 폐열보일러 용 Tube Panel과 Coil을 만드는 용접 및 벤딩 자동라인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a. 국내 신설 발전부문 공식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b. 국내 보수 발전부문 역시 공식 통계자료가 없으며 경쟁사의 DATA는 알 수 없으므로 추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에서 발전수요에 따른 신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EPC업체들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규모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발전설비의 영업 대상은 한국전력 6개 자회사와 엔지니어링사, 종합건설사 등 입니다. 발전설비 시장은 크게 발전소에서 가동 중인 보일러와 보조기기류 등 내용연수가 10~20년인 설비의 교체에 따른 보수시장과 발전소 신설에 따른 신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제철설비의 영업대상은 POSCO를 비롯한 제철소와 종합건설사가 추가되며, 해당 설비는 소결공장 배열보일러, CDQ 배열보일러, 고로공장 배열회수설비, 열연.후판공장 배열회수설비, 제강공장 배열보일러, 기타 각 공장에서 가동 중인 각종 열교환기로 구성됩니다. 제철소 자체 소요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갖추고 있어 신설 및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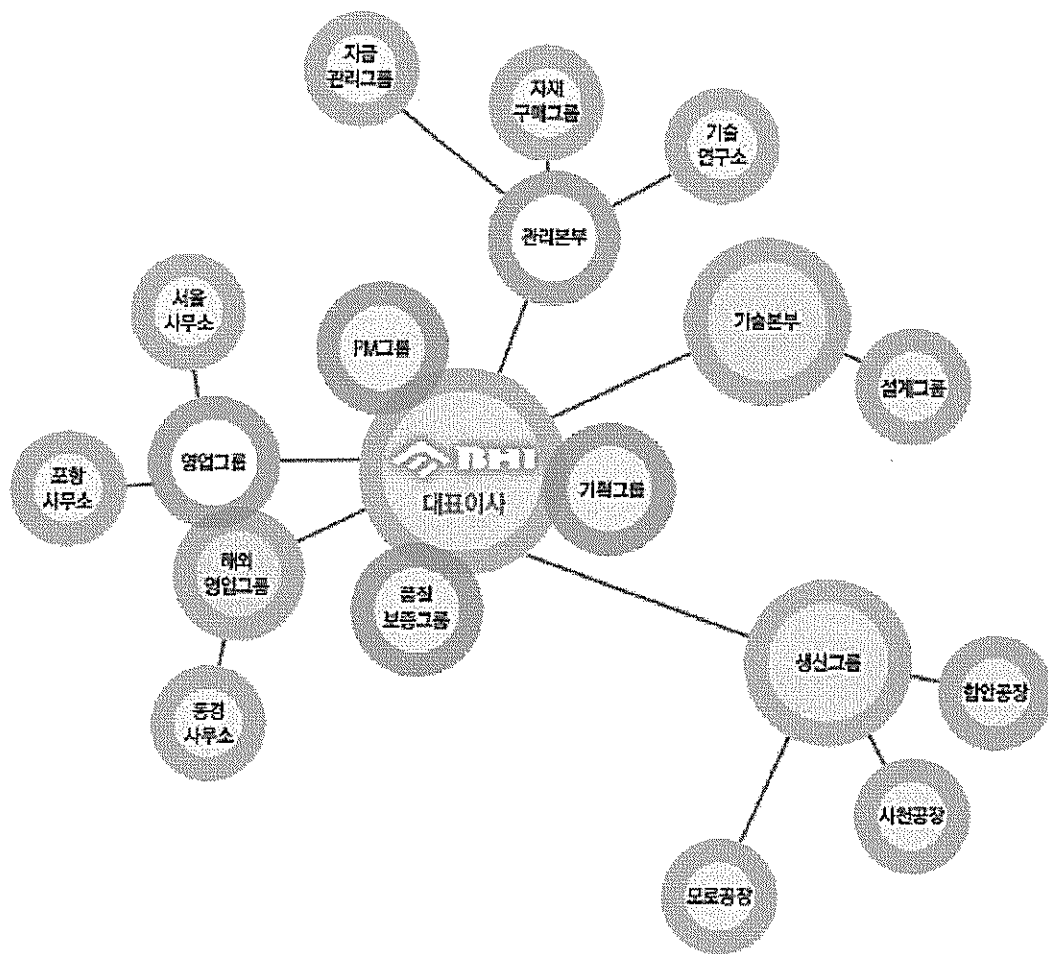
설 수요가 있으며, 운영 중인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 가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을 하는 기타 발전으로 HRSG, CDQ보일러 등이 있으며, 이는 고유가에 따라 신규투자시 뿐만 아니라 기존설비의 합리화 차원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처의 다변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 '02년 수출을 시작한 후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bhi 조직도(20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참고사항

1)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

산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라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1년 3월 5일에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11. 12. 31 현재

제 13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4 (당)기	제 13 (전)기
	금 액	금 액
자산	370,148,861,459	275,323,820,120
유동자산	207,653,239,512	127,181,546,743
현금및현금등가물	10,493,256,332	7,336,317,08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3,934,635,861	71,979,207,820
당기법인세자산	1,413,916,416	
금융자산	66,764,430,900	35,426,295,827
파생상품자산	683,566,407	4,748,945,511
확정계약자산	2,209,374,528	
재고자산	3,363,580,544	1,186,135,622
기타자산	8,790,478,524	6,504,644,881
비유동자산	162,495,621,947	148,142,273,377
유형자산	125,533,509,767	117,823,773,057
무형자산	19,046,652,588	19,281,807,985
관계기업투자	6,343,125,646	3,330,000,000
금융자산	9,081,153,039	6,183,293,915
파생상품자산	460,768,453	1,518,898,420

과 목	제 14 (당)기	제 13 (전)기
	금 액	금 액
확정계약자산	2,025,912,454	
기타자산	4,500,000	4,500,000
부채	272,129,271,200	182,293,386,958
유동부채	167,726,585,297	114,243,879,63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0,800,974,317	51,976,145,669
차입금(유동)	73,021,305,330	56,253,610,026
파생상품부채	3,067,060,397	396,914,501
확정계약부채	837,245,253	2,615,593,299
당기법인세부채		3,001,616,138
비유동부채	104,402,685,903	68,049,507,325
차입금(비유동)	88,516,501,787	55,208,892,281
파생상품부채	2,685,164,464	30,541,395
확정계약부채	401,934,197	1,339,123,924
기타금융부채(비유동)	38,000,000	68,000,000
퇴직급여채무	4,237,595,868	2,936,295,705
이연법인세부채	6,968,621,563	7,245,236,272
충당부채(비유동)	1,554,868,024	1,221,417,748
자본	98,019,590,259	93,030,433,162
지배기업주주지분	98,019,590,259	93,030,433,162
자본금	6,540,000,000	6,5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4,337,866,500	14,337,866,500
이익잉여금	81,293,225,055	74,888,333,85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9,555,429	-243,821,323
기타자본항목	-3,491,945,867	-2,491,945,867
소수주주지분		
소수주주지분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3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 (당)기	제 13 (전)기
	금 액	금 액
매출	238,889,762,514	173,452,857,544
영업이익	18,131,555,567	22,930,824,359
당기순이익	8,737,061,203	20,446,680,114
기타포괄손익	-415,734,106	-243,821,323
총포괄손익	8,321,327,097	20,202,858,79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4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3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80,542,684,325	73,794,232,879
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71,805,623,122	52,946,250,014
당기순이익	8,737,061,203	20,847,982,865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576,777,24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76,777,243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993,490,883	2,565,387,000
이익준비금	90,317,353	233,217,000
배당금	903,173,530	2,332,170,000
가. 현금배당	903,173,530	2,332,170,000
(주당배당금		

계정과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당기: 70원		
전기: 180원)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549,193,442	71,805,623,122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각호 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부대 산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2. (좌동) 13. 육해상 철구조물 및 해상플랜트 제작 판매 설치 수리 및 임대업 14. 철강재 가공 판매 설치 공사업 15. 산업· 환경설비건설업 16. 전기공사업 17. 각호 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부대 산업	사업의 목적 추가
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343조 제1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제21조의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69조>
<신설>	제40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00조>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좌동)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좌동)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391조>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 (좌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 및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12조, 상법 제412조의4>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영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④ (생략)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와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④ (좌동)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49조의2>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62조의4>
제59조(분기배당) ①~② (생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 5. (생략) (신설)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	제59조(분기배당) ①~② (좌동)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 5. (좌동)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개정상법 반영 [2011.04.14] <상법 제462조의3>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 21조의2, 40조의2, 42조, 51조, 55조, 58조, 5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길수	1956.12.01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길수	경영인	연세대학교 졸업(경제학사) 대동은행 지점장 콘티넨트개발 부사장 동연기연 대표이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2 (1)	14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억원	4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미등기 이사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